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재산분할

청 구 인

상 대 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, [redacted]

판 사

법 원 주 사

청구인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각 출석

상대방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각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5,000,000원을 2022. 10. 7.까지 지급한다.

만일 상대방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, 미지급된 돈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2. 청구인은 위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는 즉시,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 법원 [redacted]

[redacted]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한다.

3. 청구인은 2022. 9. 8.부터 계속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주거 및 근무

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청구인은 2022. 9. 8.부터 계속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, 이메일 주소, 각종 SNS 등 매체로 유선, 무선,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, 문언,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.
5. 만일 청구인이 위 제3항 또는 위 제4항을 위반할 경우,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위반행위 1회당 1,000,000원씩을 지급한다.
6.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각 포기한다(즉,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,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)
7. 그 밖에 나머지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8.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·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고,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향후 위자료, 재산분할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민사·형사·가사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(부제소합의).
9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10.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